

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중랑천파크골프 장체육시설운영 내규

제 정 2022.09.01.
개 정 2023.08.03.
개 정 2024.04.19.
개 정 2026.02.1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.) 중랑천 파크 골프장 체육시설(이하 “파크골프장 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관리·운영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외하고는 본 내규를 적용한다.
②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파크골프장 체육시설”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.
- “이용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을 체육산업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이와 관련된 부대설치 등 부수행위를 포함한다.
- “이용자”라 함은 수탁자가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이행한 후 이용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납부하고 해당시설물을 이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- “이용료”란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4조(운영목표)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, 공공성, 안정성 및 체육·문화의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리·운영한다.
- 고객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와 자연친화적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의 장을 마련한다.
-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과 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영효율 증진을 제고한다.

제5조(적용의 범위)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요체육시설 : 파크골프장, 파크골프연습장
2. 기타체육시설 : 농구장,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, 족구장

제6조(시설 운영시간 등) ① 파크골프장 운영시간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. 기타체육시설은 연중 제한 없이 개방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시설명	이용 시간		비고
파크골프장	1부	08:00 ~ 11:00	매주 월요일 및 추석연휴 휴장
	2부	12:00 ~ 15:00	
	3부	15:00 ~ 18:00	

- ②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기는 매년 3월~11월(9개월)로 제한한다.
- ③ 기타, 광진구청이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 시설관리 등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 근무 시간을 공단 복무내규상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또한 공휴일에 근무 시, 다음 날 휴무하는 것으로 하되, 업무사정 또는 부득이한 경우 조정하여 휴무 또는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시설개방 및 이용)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자에게 공평한 이용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보호, 안전상의 이유 등 체육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2 장 파크골프장 운영

제9조(운영기간 및 시간)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이며, 운영시간은 혹서기등 계절별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월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로 한다.

1. 3~6월 : 1부 08:00~11:00, 2부 12:00~15:00, 3부 15:00~18:00
 2. 7~9월 : 1부 07:00~10:00, 2부 10:00~13:00, 3부 16:00~19:00
 3. 10~11월 : 1부 08:00~11:00, 2부 11:00~14:00, 3부 14:00~17:00
-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
제10조(휴관) 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및 추석 연휴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제2항 ‘천재지변’으로 인한 세부 휴관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.

1. 폭우·폭설로 인한 중랑천 차단기 발동 시
2. 강수량 시간당 15mm 이상 예상될 시
3. 적설량 20cm 이상 예상될 시
4.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 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시
5. 중랑천 차단기 발동 시 등

제11조(이용허가) ① 파크골프장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예약홈페이지에서 해당일 이용을 사전에 예약신청하여야 한다.

② 1일 예약가능 팀은 다음 표와 같으며 1팀당 최소이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파크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다.

시설명	이용 시간		예약가능팀	팀당 최소이용인원	팀당 최대이용인원	최대수용인원
파크골프장	1부	08:00 ~ 11:00	12개팀	3명이상	4명	48명
	2부	12:00 ~ 15:00	12개팀	3명이상	4명	48명
	3부	15:00 ~ 18:00	12개팀	3명이상	4명	48명

③ 1일 예약가능시간은 1~3부 중 1타임만 예약할 수 있다. (일일 1~3부 중복 예약 불가)

제12조(이용허가 순위) 2인 이상이 시설물 사용을 위해 다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.

1. 국가, 서울시 또는 광진구의 공공행사
2.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경기·행사

제13조(이용신청 및 절차) ① 이용신청은 사용일 전월 15일 온라인 이용예약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.

②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과 같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.

③ 이용일정은 온라인 이용예약시스템을 공지하되, 필요시 다른 매체에 공지할 수 있다.

④ 사용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이용예약시스템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) 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을

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적용한다.

- ②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③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64조에 의거하여,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회원만 이용자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회원가입 후 매 2년마다 재동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(이용자 재동의)

제15조(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)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」를 적용한다.

제16조(입장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통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.

1.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
2. 위험물소지자나 음주자 등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
3.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
4. 시설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업 상행위를 하는 자
5. 타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

제17조(양도 및 전매금지 등)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, 전대할 수 없다.

제18조(이용자 사고시 보상 및 배상) ① 파크골프장 시설물 관리상 과실, 운영시간 중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용자의 사고발생 시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에 보상하여야 한다. 단, 기타 체육시설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민사소송 업무 등은 제외한다.

- ②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이용자는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,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- ③ 시설물의 준수사항, 안전수칙 위반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
제19조(기타체육시설 관리) ① 공단은 기타 체육시설의 고객관리(현장민원 등) 및 100만원미만의 경미한 시설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만 관리한다.

- ② 기타 체육시설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민사소송업무는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대응한다.

제 3 장 이용료 등 관리

제20조(이용료의 징수)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구청장이 부과·징수하되, 이용료의 금액은 관련조례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요금부과 : 팀(4명)대표자 1인에게 부과
2. 이 용 료 : 1일(**1~3부 운영**) 1부 8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3. 이용인원 : 4명(3명 이상 예약신청가능)

제21조(이용료 납부방법 등) 온라인 이용예약시스템 내에서 팀대표자 1인이 예약 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완료된다.

제22조(이용료 감면) 이용료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

제23조(이용료 반환) 이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.

1. 공단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때 : 전부 반환
2. 천재지변, 재난 등 이에 준하는 어쩔수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: 전부 반환
(※재난의 정의 :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·홍수·호우·폭풍·폭설·가뭄·지진·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, 화재붕괴·폭발·교통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영병 확산 등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.)
3.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100% 반환
4.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이후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반환금액 없음

제 4 장 보 칙

제24조(준용)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.

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5조(내규 위반시 책임) ① 내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위반자가 책임지며,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① 법적분쟁 발생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단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**2026년 2월 11일부터**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내규는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.